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6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 명칭변경
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
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를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

나.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 개정

-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⇒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
나. 현장책임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용어의 정의 개정

다.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를 별표에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

-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고
 - 현장책임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용어의 정의 개정과
 - 별표를 신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명시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